오산시의회 공고 제2023-23호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4월 7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조미선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○ 오산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식품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

다. 지원신청 방법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○ 제출기일 : 2023년 4월 13일까지

○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
○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
○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
· 우편번호 : 447-701

·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
·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
· 전자메일 : blue6017@korea.kr

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오산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식품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식품위생업소"란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.
- 2. "단체"란 「식품위생법」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을 말한다.
- 3. "음식문화 개선사업"이란 음식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.
- 4. "모범업소"란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.
- 5. "우수업소"란 위생등급기준(음식점 위생등급제 포함) 결과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.
- 6. "위생등급지정업소"란 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의2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.
- 7. "오산 맛집"이란 오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소재한 휴게·일반음식점에서 조리·판매되는 음식의 맛, 위생, 서비스,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오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.

- 제3조(지원대상) 지원 대상은 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 - 1. 모범업소 및 우수업소, 위생등급지정업소
 - 2. 제2조제7호에 따른 오산 맛집
 - 3.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위생업소 또는 단체
- 제4조(지원사업) 시장은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위생수준 향상 및 환경개선을 위한 영업장, 주방, 화장실 등 시설개선 사업
 - 2. 음식문화 개선사업, 식품안전 관리 및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위생용 품 및 홍보물품 지원 사업
 - 3. 식품위생업소의 전문능력 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교육, 현 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
- 4.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(지원신청)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6조(현지조사 및 선정)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제7조(지원의 제한)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- 1. 「식품위생법」위반으로 영업정지(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)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,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
- 2. 영업신고, 영업신고사항 변경(소재지 변경)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
- 4.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
- 제8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 다.
 - 1. 지원대상 식품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
 - 2. 그 밖에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
 - ② 위원회는 「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오산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식품위생업소 지원사업 신청서

신청인	성 명		생님	년 월 일				
	주 소							
업소현황	업 소 명		사업자등록번호					
	소 재 지		ı					
	대 표 자		전화번호 ·		일반 휴대			
	건물소유 형 태	□ 자가 □	전세	□월세	□기타			
	업종			영업징	-면적			
	소재지 시작일				자 일			
지원요구	지원구분							
	지원시설							
	사 업 비	총 사업비	Ĵ	원 (지원신	청액	원, 자부담	원)	
	신청사유	"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"						
첨부서류	• 사업계획서 1부 (별지 제2호서식), 영업신고증 사본 1부,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						
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.								
			년	월	일			
				신	청 인		(인)	
오산시장 귀하								

사업계획서

업 소 명		사업자등록번호	-					
소 재 지								
대 표 자	(남/여)	생년월일						
1. 사 업 명 : 2. 사 업 비 :	원(보조	금 원, 자부	담 원)					
3. 사업현황								
가. 규 모 :								
나. 시 설 :								
4. 사업계획								
명	칭	수 량	사업비(원)					
ठीं	계							
※ 붙임 견적서 참조								
5. 그 밖의 사항 :								
년 월 일								
		신청인	(인)					
붙 임: 견적서 사본 1부								

[별첨]

관계법령 발췌서

[식품위생법]

- 제47조(위생등급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·가공업소(공유주방에서 제조·가공하는 업소를 포함한다), 식품접객업소(공유주방에서 조리·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)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. 18., 2013. 3. 23., 2016. 2. 3., 2020. 12. 29.>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)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·검사·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
 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 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6. 2. 3.>

원 등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. 18., 2013. 3. 23.>

-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 1. 18., 2013. 3. 23.>
- 제47조의2(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(공유주방에서 조리·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)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29.>
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및 위생등급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 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 - ④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는 그 위생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, 광고할 수 있다.

- ⑤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. 다만,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- 1.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- 2. 위생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 · 광고하는 경우
- 3.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
-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
-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 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출입·검사·수거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.
- ⑨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89조의 식품진흥기금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제7호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-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를 「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29.>
- ① 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과 그 지정 절차, 제3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결과 공표 및 제7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5. 5. 18.]

- 제59조(설립) ① 영업자는 영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의 보호·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(이하 "조합"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 다. <개정 2022. 6. 10.>
 -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.
 - ③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(20명을 초과하면 20명으로 한다)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8., 2013. 3. 23.>
 -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12. 11.>
 -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

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8. 12. 11.>

- ⑥ 조합은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는 날 또는 제5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에 성립된다. <개정 2018. 12. 11.>
- ⑦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11.>

[식품위생법 시행령]

- 제21조(영업의 종류)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3. 15., 2011. 3. 30., 2013. 3. 23., 2013. 12. 30., 2016. 1. 22., 2017. 12. 12., 2021. 12. 30., 2022. 6. 7.>
 - 1. 식품제조・가공업: 식품을 제조・가공하는 영업
 - 2.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: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·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 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
 - 3. 식품첨가물제조업
 - 가. 감미료 착색료 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
 - 나.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·가공 하는 영업
 - 다.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·가공하는 영업
 - 라. 기구 및 용기·포장을 살균·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 (移行)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·가공하는 영업
 - 4. 식품운반업: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(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)나 어류·조 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·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. 다만,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·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- 5. 식품소분·판매업
 - 가. 식품소분업: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·판매하는 영업
 - 나. 식품판매업
 - 1) 식용얼음판매업: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
 - 2) 식품자동판매기영업: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. 다만, 소비기한 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- 3) 유통전문판매업: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·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 호의 식품제조·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·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·판매하는 영업
 - 4)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: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
 - 5) 삭제 <2016. 1. 22.>

6) 기타 식품판매업: 1)부터 4)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, 슈퍼마켓,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

6. 식품보존업

- 가. 식품조사처리업: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(業) 으로 하는 영업
- 나. 식품냉동·냉장업: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. 다만, 수산물의 냉동·냉장은 제외한다.

7. 용기 • 포장류제조업

- 가. 용기·포장지제조업: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(옹기류는 제외한다)·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
- 나. 옹기류제조업: 식품을 제조·조리·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, 항아리,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

8. 식품접객업

- 가. 휴게음식점영업: 주로 다류(茶類),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·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,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·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. 다만, 편의점, 슈퍼마켓, 휴게소,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(만화가게 및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)에서 컵라면,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나. 일반음식점영업: 음식류를 조리·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
- 다. 단란주점영업: 주로 주류를 조리·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
- 라. 유홍주점영업: 주로 주류를 조리·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홍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마. 위탁급식영업: 집단급식소를 설치·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
- 바. 제과점영업: 주로 빵, 떡, 과자 등을 제조·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
- 9. 공유주방 운영업: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